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1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6월 10일, 최수진의원 등 18인

나. 회부일자: 2024년 6월 1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7.1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2024.9.4.) 상정, 축조심사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2025.2.26.) 상정, 축조심사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2025.4.16.) 상정, 축조심사

제425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2025.5.8.) 상정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2025.7.7.) 상정, 축조심사, 의결
(대안반영 폐기)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7.7.)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최수진의원)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신청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성을 평가하여 적합 여부에 관한 의견을 기획재정부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성 평가 결과 적합의견을 제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신속하고 유연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예비타당성조사가 폐지될 경우 우려되는 사업부실, 예산낭비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기술성 평가제도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대체하는 제도로 개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3.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임명현)

개정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기술성 평가로 대체하고, 기술성 평가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사업 추진의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나, 정책의 일관성과 사업추진 상 위험요인 검토 여부 등 예비타당성조사와 기술성 평가의 취지, 평가항목 등 상이한 부분에도 불구하고 대체가 적절한지 고려할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